

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북 노 회

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, 1108호
(연지동, 기독교연합회관) (03129)

TEL:708-4412~3
FAX:708 - 4415

서북노 제82-53호

2024. 8. 6.

수 신 : 당회장 및 노회원(목사, 장로 총대)

제 목 : 제83회 정기노회 소집

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.

『제83회 정기노회』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당회장 및 노회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
바라며,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서류 제출 및 해당 부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제83회 노회 일정

- ① 일 시 : 2024년 10월 29일(화) / 오전 9시 ~ 오후 3시(예정)
- ② 장 소 : 상신교회(서은성 목사 시무 /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14, ☎ 936-7071)

2. 안수식

- ① 일 시 : 2024년 10월 31일(목) / 오전 10시 30분
- ② 장 소 : 상신교회

3. 각부회 일정

- 노회 회의안 자료용 보고서(사업경과 및 회기 결산보고)는 **2024. 9. 30.(월)**까지
노회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부 서	회의 일정	장 소	안 건
훈 련 원	9/21(토) 오후2시	영암교회	항존직 피택자교육
국내선교부	9/19(목) 오전11시	노회사무실	전도목사 청빙 및 연임 관련 현의 건 면담
고 시 부	9/28(토) 오전10시	상신교회	83회 노회고시 실시
교육자원부	9/20(금) 오전11시	노회사무실	신학생 수업계속 추천 면담(신대원1,2학년)
정 치 부	10/1(화) 오전10시	상신교회	83회 현의서류 검토 및 면담 * 면담 : 위임, 담임, 부, 교육, 전도목사 청원자, 목사안수 청원자, 기타 신임 청원자
공천위원회	10/2(수) 오전10시	노회사무실	83회기 공천 (시찰장)
감사위원회	10/4(금) 오전10:30	노회사무실	노회 정기감사

※ 첨 부 : 정기노회 지시사항. 끝.

노 회 장 김 학
서 기 김 재



▶ 별첨 <지시사항>

1. 시찰장님께

- ① 헌의서류 마감 : **2024년 9월 12일(목)까지**
 - 1) 노회규칙에 의거 **서류접수 기일(노회 20일 전) 경과時 접수할 수 없음**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제출서류
 - ★ 1) **시찰보고서** / 임시당회장 명단, 각 교회 상황보고서 (**노회총대의 주소, 연락처 변경사항 확인**)
 - 2) 성찬위원 / 분병·분증 각 1인
 - 3) 헌의서류 및 목록
 - 4) **미비서류와 상회비 미납교회의 서류는 일체 접수할 수 없어 반려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**

2. 당회장님께

- ① **귀교회 노회원(목사,장로총대)께 【노회소집공문】을 필요한만큼 복사하셔서 1부씩 배부해 주시기** 바랍니다.
- ★② **‘노회 목사·장로 총대 및 교회 현황보고서’를 노회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 반드시 시찰회에 제출하시기** 바랍니다.
- ③ 헌의서류 양식은 노회홈페이지(sbbp.or.kr) 자료실에서 Down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④ 헌의서류는 **접수기일 경과 및 상회비 미납의 경우에는 노회결의에 의해 접수할 수 없습니다.**
- ⑤ **4월 노회시 당회록검사(미자립교회 : 제직회의록 검사) 받지 않은 교회 당회 서기께서는 노회참석 시 꼭 지참하시기** 바랍니다.
- ⑥ 헌의서류 구비서류

번호	청원서	첨부서류
1	교회신설 및 가입청원	청원서, 개척신설교회의 성장계획서, 교회에 대한 건물 사용승낙서, 교회재산현황보고(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원본 첨부), 교인서명부, 인근교회 동의서, 유지재단가입확인서 각 1통 교역자의 청빙서 및 이력서사본, 최종학교졸업증명서, 총회 교회개척훈련수료증 또는 등록증 사본
2	교회 분립(합병)청원	청원서, 교인서명부, 분립(합병)결의서, 토지·건물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각 1통
3	교회 이전 청원서	청원서, 당회결의서, 제직회 동의서, 교회재산현황보고(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원본, 공증서 첨부) 각 1통
4	목사시무 사임 청원	청원서, 당회결의서 각 1통
5	위임목사 청원	청원서, 청빙서, 당회록 사본, 공동의회 회의록(공동의회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),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(입교인) 과반수 서명날인 명단, 이력서, 기본증명, 혼인관계증명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등본, 연금계속납입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,활용 동의서 각1통
6	담임/부/교육목사청원	청원서, 청빙서(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서명날인한 명단), 이력서, 기본증명, 혼인관계증명,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등본,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 사본, 연금계속납입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,활용 동의서 각 1통
7	담임목사 연임청원	청원서, 연금계속납입증명서, 당회록과 제직회의록 사본(미조직교회는 제직회의록 사본만)
8	부/교육목사 연임청원	청원서, 당회록 사본, 연금계속납입증명서 각 1통
9	전도/기관목사 청원	청원서, 청빙서, 이력서, 기본증명, 혼인관계증명, 가족관계증명, 연금계속납입증명서, 제직회(또는 이사회) 회의록, 국내선교부 회의록 사본, 개인정보 수집,활용 동의서 각 1통

번호	청원서	첨부서류
10	전도/기관목사 연임청원	청원서, 제직회(이사회) 결의서 또는 재직증명, 사역보고서(2년간) 국내선교부 회의록, 연금계속납입증명서 각 1통
11	목사안수 청원	청원서, 청빙서 사본, 이력서 사본, 목사고시합격증 원본, 교역경력증명서 각 1통
12	담임전도사사무 청원	청원서, 당회(없으면 제직회)의 시무결의서 사본, 이력서, 기본증명, 혼인관계증명, 가족관계증명, 전도사고시합격증(또는 확인서) 원본, 개인정보수집, 활용 동의서 각 1통
		※타노회의 경우 - 목사후보생이전증서(또는 전소속노회 확인서) 첨부
13	담임전도사사무 연임청원	청원서, 당회(없으면 제직회)의 시무결의서 사본 각 1통
14	장로선택 허락청원	청원서, 당회결의서(미조직교회는 제직회의록 사본) 각 1통
15	장로고시 연기청원	청원서 1통

▶ 현의서류 준비시 참고사항

1) 교회 예배처를 이전할 경우는 “교회이전허락청원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

2) 교회신설(가입) 청원

★ 헌법 정치 제2장 10조 (지교회의 설립) /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(입교인) 15인 이상이 있어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.

★ 노회 결의사항

- ① 교회설립, 노회가입시 교회자산(임대보증금)이 서울지역은 3천만원, 기타지역은 2천만원 이상이 된 교회를 가입허락하기로 하다(제79회-2022. 10. 25)
- ② 교회신설(가입)시 경유기관(시찰회, 국내선교부)에서는 교회재산현황을 보고 받아, 재정부를 경유(확인)하여 정치부로 보내기로 하다.(제63회-2014. 10월)

3)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(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1), 전도사의 자격 (헌법 정치 제 7장 49조)

★ 제4항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(위임, 담임, 부목사, 전도, 기관)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.

● **당회의 조직 및 폐지** (헌법 정치 제10장 64조, 65조 /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4조 참조)

● **교육목사 관련**

- ①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,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다.
- ② 조직교회(위임,담임)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,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.
- ③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.
- ④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.

3. 노회고시 및 목사후보생에 대하여

① 고시부

- 일시 및 장소 : **2024년 9월 28일(토) 오전10시 / 상신교회**

청원 내용	장로고시청원	전도사고시청원	목사후보생고시청원
고시 과목	성경, 헌법-교라 정치 권장 예배모범, 면접 (단, 서울북노회 성서신학원 졸업자는 학과시험 면제)	성경, 헌법(교라 정치 권장 예배모범), 교회사, 면접	성경, 요리문답, 면접
제출 서류	청원서(당회장추천서),이력서(사진) 가족관계증명서, 공동의회록사본, 노회교육 이수필증, 성서신학원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통	청원서, 이력서(사진), 성서신학원(또는 신학교) 졸업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앙고백서 각1통	청원서 및 당회장추천서, 세례증명서,최종학교졸업증명서, 이력서(사진),가족관계증명서, 신앙고백서 각 1통

※ 참고자료 : 한국장로교출판사 “**종합고시문제집**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노회에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**차후2년까지** 유효하도록 한다(43회 노회 결의사항)

※ ‘훈련원 교육 이수 필증’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장로고시 청원을 허락하기로 하다(54회 노회 결의사항)

※ 장로 임직 : 헌법 정치 제42조 제1항에 근거 장로로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.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(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)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되었다면 헌법 정치에 근거한 교육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금회에 한하여 ‘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’은 받게 하되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노회의 판단에 따라 노회고시를 치를 수 있으나 반드시 4개월 교육 이수 후 임직해야 한다.(총회헌법해석/접수번호 199)

② 교육자원부 - 신학생 수업계속추천 면담

- 일시 및 장소 : **2024년 9월 20일(금) 오전11시 / 노회사무실**

- 참석대상 : 본노회 소속 재학생 {신대원 1, 2학년(신학수업계속허락 청원자만 면담)}

- 현의청원 서류

번호	청 원 서	첨 부 서 류
1	신학수업계속허락청원	청원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통

4. 참 고 사 항

1. 교회 단독목회 전도사는 노회에 참석·방청토록 하고, 여비는 해 교회에서 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총대 여러분은 모든 회무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고,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찰서기를 통해 서기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
3. 수정된 서식이 있으니 현의 서류 및 제출 서류는 노회 홈페이지에서 반듯이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4. 기타 노회와의 연락 사무는 노회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.

